

KOREAN VERSION: Crime Victims Have Rights!

범죄 피해자들이여

권리를 찾아라!

서두(Introduction)

당신이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것에 대해 마음 아파게 생각합니다. 범죄의 피해자로서, 부상, 손실, 혼란과 생활의 변화들을 경험하실수도 있습니다. 충격, 불신감, 두려움, 피해의식, 분노와 좌절감들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형사법 체계에 관한 정보를 알고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범죄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곧 형사법이 가동 됩니다. 그러한 범죄의 피해자로서 혼란스러우며, 때로는 좌절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 절차 동안 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며 도움을 주도록 콜로라도 주 전역에 피해자 및 증인들을 보호해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본 책자는 당시의 권리들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가장 궁금한 사항에 답변할수 있도록 준비되었습니다.

범죄 피해자들은 형사법의 중요한 부분이기에, 1992년 콜로라도 주 법에 피해자들의 권리를 위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피해자 권리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범죄의 피해자나 그 사람의 법적 지정인, 법적 대리인, 혹은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직계가족들은 형사법 진행의 모든 중요한 단계들에 참석하거나, 통보 받거나, 관련된 사항들에 관하여 청문할 권리가 있다. “중요한 단계들”을 포함한 모든 용어들은 주의회에서 정의한다(콜로라도 주 헌법 II 장, 제 16A 조항).

Crimes Covered by the Victim Rights Act

피해자 권리보장 법에서 취급되는 범죄들

콜로라도 주 헌법과 주 법규[C.R.S. 24-4.1-302(1)조항]는 다음과 같은 범죄행위들의 피해자들에게 법에서 정한 권리들을 보장합니다:

- 살인
- 과실치사
- 형사상 부주의성 살인과 차량 살인
- 폭행
- 위협
- 납치
- 성폭행
- 근친상간 및 가중된 근친상간
- 아동학대
- 아동성적유용
- 위험한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과 사람들에 대한 범죄
- 부적절한 노출
- 성폭행 죄로 기소된 사람에게 처분된 형사보호 법정명령에 대한 위반
- 강도—탈취, 약물 탈취
- 가정폭력으로 사료되는 범죄들
- 피해자의 죽음을 유발하는 부주의 운전
- 피해자의 사망 사고 현장에서 외면
- 스토킹
- 인종적 위협
- 피해자나 증인에 대한 보복
- 피해자나 증인에 대한 회유
- 피해자나 증인에 대한 위협과 가중된 위협
- 위에 언급된 어떤 종류의 범죄들과 관련하여 범행시도, 공모, 범행교사 혹은 공범

만일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장애인이 된 경우, 피해자의 배우자, 부모, 형제 자매, 조부모, 법에서 인정하는 대리인들이 이러한 권리들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Critical Stages

중요한 단계들

형사법률 절차에서 피해자들의 권리들은 특정한 “중요한 단계들”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단계들은 다음과 같다:

- 기소 혹은 불기소를 결정해야함
- 예심 청문회
- 보석금의 감면 혹은 수정된 청문회*
- 권리확인 청문회
- 동의안을 위한 청문회
- 피해자의 정신건강, 의료, 교육 혹은 피해자 보상기록들에 대한 법정구인
- 기소된 사람에 대한 고소장 혹은 죄목들에 대한 처분 심리*
- 재판
- 판결 청문회*
- 상급법원의 재심 혹은 상급법원의 결정
- 판결 재심*
- 집행유예 위반 청문회
- 범죄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소재과약을 알 수 없거나 혹은 소재지 신고를 하지않았기 때문에 집행유예 국의 고소장, 소환장, 혹은 체포영장에 대한 제출
- 사건심리의 지역 변경 혹은 집행유예감독 장소의 변경
- 피고인의 판결 만료이전에 집행유예 감독에 대한 방면 요청
- 어느 법정청문회에서 판결에 대한 공격 혹은 유죄판결에 대한 공격이 예정되는지
- 가석방신청 청문회
- 범죄 유죄 인이 감옥에서 가석방, 방면, 혹은 출옥
- 가석방위반에 대한 청문회
- 통제하지 않는 시설에 있는 범죄 유죄인의 장소 혹은 처소 변경
- 범죄 유죄인 혹은 기소된 자가 어느 주립병원으로부터의 이전, 퇴원, 혹은 도주
- 성범죄자 등록을 만료시키기 위한 성범죄자의 청원
- 중범죄의 사건에서 범죄인 처형

*절차에 대한 정보를 받고 참석할 권리가 있으며, 피해자는 보석금의 인하 혹은 변경, 집행유예, 그과같은 협상을 거절 혹은 수락, 그리고 수정된 판결을 포함한 판결청문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피해자권리보호법

1993년 1월부터 발효된 피해자권리보호법으로 알려진 법안이 실행되었으며, 그 후 1995, 1997, 2000, 2006, 2007, 2008, 2009에 개정되었습니다. 법의 공정한 판결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권리보호법은 형법절차상에서 범죄의 피해자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줍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들은 피해자권리보호법에서 보장해주는 권리들의 요약입니다. (당신의 권리들의 모든 내용들은 웹사이트 <http://dcj.state.co.us/ovp>에 가서 콜로라도 개정법안 24-4.1-301에서 24-4.1-304 조항들을 참조하십시오):

- 공정하고, 존중받고, 존엄하게 대우 받으며;
- 형사법률 절차에서 모든 “중요한 단계들”에 대하여 통보 받으며(판결 후 중요한 단계들에 대하여서는 범죄의 피해자들이 서면으로 통보요청을 해야함);
- 형사법률 절차에서 명시된 중요한 단계들에 참여하며;
- 협박, 괴롭힘, 혹은 학대로부터 보호 받으며;
- 범죄로 기소되거나 혹은 유죄 판결받은 사람 혹은 그를 대신한 사람이 협박 혹은 괴롭힘이 있을 경우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는지에 대하여 통보 받으며;
- 보석금의 감소 혹은 변경, 답변협약에 대한 인정, 그리고 판결 혹은 수정된 판결에 대하여 참석하여 청문할 수 있으며;
- 사건에 대한 어떠한 처분 전, 혹은 정식재판에 회부되기 전 검찰과 상의할 수 있으며 그리고 그 사건의 최종처분에 대하여 통보 받으며;
- 사건의 정황과, 만일 미리알수 있을 경우, 스케줄의 변경 혹은 취소될 경우 통보 받으며;
- 피해영향 정도에 대한 진술서를 준비하여 판결 청문회에 참석하거나 청문할 수 있으며;
- 법정 측이 피해보상 정도를 결정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리고 범죄로 유죄인정 받은 자에 대하여 민사상의 소추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통보 받으며;
- 어느 재판에서든 어떤 관련당사자 측으로부터 피해자의 주소, 전화번호, 직장 혹은 다른 위치정보에 대하여 강요하는 증언을 방지하며;
- 증거물로서 더 이상 채택될 필요가 없을 경우 신속히 본인의 사유물을 반환 받을 수 있으며;
- 재정지원과 지역사회의 서비스의 이용가능성에 대하여 통보 받으며;
- 형사소송 담당 공무원들과의 만남이나 법정출두에 관하여 고용주 측과 적절한 조정서비스를 제공하며;
- 법정에서의 어떠한 형법절차 중 소추 과정들이 신속하며 공정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검찰과 법 집행공무원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확인하며;
- 재판 중 안전하게 보호된 대기장소가 항상 있으며;
- 범죄인을 교도소로 보내는 것을 통보 받으며, 또한 서면으로 작성되거나, 구두 표현된 피해자의 피해영향 진술서, 혹은 두 가지 함께 교정 국과 고등법원이 범죄자를 교도 및 교화 시설과 프로그램에 유치할 경우 그러한 피해자진술서가 참작이 되며; 만일 지역교화소 위원회가 범죄인을 교도소에서 지역 교화소로 이전시키는 것을 고려할 경우, 지역교화소 위원회에서 피해자는 별도로 구두진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 서면 요청에 따라, 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인정 받은 자가 (카운티유치장 이외의) 교도소에서 석방되거나, 사면되거나, 혹은 집행유예나 사면상태에서 도주, 무단이탈 도망된 것을 통보 받으며;
- 성범죄자 등록종료에 대한 청원서가 제출되는 경우 통보 받으며;
- 요청에 따라, 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인정 받은 자가 카운티유치장에서 석방되면 통보 받으며;
- 서면 요청에 따라, 어떠한 종류의 판결에 대한 재심이나, 사면, 혹은 판결에 대한 감형에 관하여 청문하거나, 통보 받으며;

- 서면 요청에 따라, 유죄인정 받은 자가 감시가 적은 교도소나 프로그램으로 유치나 이첩되는 경우, 혹은 영구적 혹은 일시적으로 주정부운영 병원에 입원하거나 퇴원할 시에도 통보 받으며;
- 검찰 측의 선별에 따라, 집행유예 국의 보고서 일부나 전부를 볼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 법정 명령된 HIV(후천성 면역 결핍증) 검사결과를 통보 받으며;
- 미합중국 혹은 콜로라도 주 헌법에 의거한 피해자 권리들을 통보 받으며;
- 피해자 권리 보호법 준수 집행절차를 통보받게 됨.

아동 범죄 피해자들에게는 추가적인 권리들과 서비스들이 제공됩니다. 경찰관, 검사, 그리고 판사는 아동과 그/그녀의 가족들이 법률절차를 이해 하였는지에 대하여 1명 이상 인원들이 확인될 수 있도록 권장하며, 그리고 범죄의 정신적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도움과 후속 형법절차들을 도울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관계 기관들의 의무사항들

형사법관련 기관들은 피해자들이 그들의 권리혜택을 받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한 의무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 측의 의무사항들

경찰기관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하여 범죄 피해자들에게 서면으로 작성된 정보사항들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피해자 권리보호법에 나열된 권리들;
- 피해자 보상 혜택과 같은 재정적인 도움의 이용가능과 그러한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방법;
- 범행으로 기소된 사람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하여 보호차원의 법정명령들의 이용가능;
- 사건과 관련된 공공기록들의 이용가능.

추가로, 경찰기관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필요합니다:

- 위급 시 제공되는 서비스나, 피해자 지원, 법률, 정신건강, 재정 및 다른 보조서비스와 같은 공공서비스들에 관한 정보들을 제공하며;
- 통역서비스와 범죄로 인하여 재정적으로 곤란한 경우는 채권자들과 조정하는 것에 도움을 주는, 그리고 범죄의 피해자들이 기소절차들에 협력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돌보아 주는 정보사항들을 제공하며;
- 범죄의 피해자에게 지방검찰청의 주소와 전화번호, 사건번호, 그 사건의 담당 수사관의 이름, 주소와 전화번호를 제공하며;
- 혐의자를 구속하였는지, 알 수 있다면, 혐의자가 석방 되거나, 혐의자에게 부과된 보석금의 상황에 관하여 범죄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통보해주며;
- 죄목들로 기소이전에도, 사건의 새로운 정황에 대하여 알려주며;
-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소유물이 증거물로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경우 근무하는 5일 이내에 반환하며;
- 경범죄사건들에서는 기소중지에 대한 결정들에 관하여 범죄의 피해자에게 통보하며;
- 미해결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사건의 정황변화에 대하여 통보하며;
- 서면 요청에 따라, 법률로 정한 3년 기간의 시효에 해당되는 미해결사건의 피해자들에게 매년 그 사건의 상황을 새로이 알려줍니다.

검찰 측의 의무사항들

지방검찰청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범죄 피해자들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 죄목들의 기소와 죄목들에 대한 설명을 해주며;
- 중범죄사건의 경우 기소중지 결정시;
- 재판에서 충분히 중요한 단계들과 특별히 중요한 단계의 날짜와 시간, 장소;
- 사건담당 검사의 성명과 담당 법정;
- 실질적으로 기소 지연 시킬 수 있는 계류되어있는 동의안과 그러한 동의안에 대한 피해자의 입장을 법정에 표명 통보해주며;
- 이용 가능한 혜택들과 법정에 가기위한택 교통편;

- 미리 알 수 있다면, 스케줄의 변경이나 취소.

추가로, 검찰은:

- 가능하다면 죄목들의 감형이나, 협상된 답변, 무죄 혹은 다른 처분들에 관하여 피해자와 상의 해야 함;
- 재판 전, 재판 중, 그리고 바로 재판 직후에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접촉을 최소화 해야 함;
- 증거물로서 더 이상 채택될 필요가 없을 경우 피해자의 사유물을 신속히 반환해 줄수있도록 함;
- 피해자가 법정에 제출하는 피해자영향 진술보고서에 대하여 준비작성 할수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 판결전보고서와 피해자 영향 진술 보고서에 대한 피고인이 검토 권리가 있듯이, 피해자에게 판결 전 보고서의 역할과 그 보고서를 작성한 집행유예 관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통보해야 함;
- 판결청문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피해자의 권리를 설명해주어야 하며;
- 판결에 대한 재심이나 변경을 위한 청문회에 대하여 통보해주어야 하며;
- 유죄인정받은자의 투옥이나 석방에 관하여 교도소로부터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해자에게 통보해주어야함.

법원 측의 의무사항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습니다:

- 실질적인 기소지연을 유발할수도있는 어떠한 동의안에 대한 피해자의 반대의사를 기록에 명시함과 동시에 기소지연을 허락하기 이전 그러한 반대의사가 고려되었다는 것도 기록에 명시해야 함;
- 필요에 따라 피해자가 배제되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형법절차상의 중요한 단계들에 피해자가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줌;
- 기소되거나 유죄 인정받은 자의 보석금 감면 혹은 변경, 협상된 답변협약의 인정, 판결, 판결변경들을 포함한 재판에 피해자의 참석여부 질의와 청문하도록 허락해야 함;
- 법정명령으로 행해진 HIV(후천성 면역 결핍증) 검사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함;
- 배심원들의 판결에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도록 모든 적절한 노력을 해야 함;
- 유죄 인정받은 자가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액을 지불하게 될 경우 그 금액을 정해줌;
- 피고인이 판결받은이후에 피해자 통보에 책임 있는 부서에게 피해자에 대한 정보사항을 제공함;
- 요청에 따라, 성범죄자 등록을 정지시키기 위한 성범죄자의 청원을 피해자에게 통보해줌(C.R.S. 16-22-113(2)(c) 참조)

집행유예국의 의무사항들

피해자의 서면요청에 따라, 집행유예국은:

- 집행유예국의 사건담당 집행유예 감독관의 위치와 전화번호를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함;
- 가해자의 집행유예 감독 만료 날짜를 피해자에게 통보해야 함;
- 정해진 판결에서 미리 방면을 요청받게되면 피해자와 상의 해야 함;
- 집행유예 철회 혹은 변경청문회의 날짜를 통보해야 함;
- 집행유예 감독을 다른 지역으로 이송하거나, 관할이전 시 피해자에게 상의해야 함;
- 가해자의 소재지를 알 수 없거나, 보고 및 출두하지 못한 이유로 집행유예 국이 고소한 고소장, 소환장, 체포영장을 피해자에게 통보해야 함;
- 집행유예상태에서 가해자가 사망하면 피해자에게 통보해야 함;

-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어떤 행위의 결과로 감독 수위를 높이게 되면 이를 피해자에게 통보해야 함.

교도소, 지방 구치소, 소년원의 의무사항들

피해자의 서면요청에 따라, 교도소, 공공 및 사기업운영 지방 구치소, 소년원은:

- 피해자에 대한 주소, 전화번호, 직장, 혹은 다른 개인 신상정보들과 같은 특정정보들에 관하여 비밀보장 해야함;
- 가해자를 공공 혹은 사기업운영의 지역 교도시설이나 프로그램에 유치해야 하는 문제에 대하여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 영향 진술 보고서도 포함됨;
- 구금되어 있는 기관과 예정된 구금에서 석방되는 날짜나, 가석방 하거나, 노동 석방되거나, 혹은 지역 교도소로 보내는 내용들과 (미리); 가석방 청문회; 도주, 이전, 혹은 석방; 보안시설이 없는 시설로 이전; 구금중 사망등을 피해자에게 통보해야 함.

청소년 가석방 위원회의 의무사항들

피해자의 서면 요청에 따라, 청소년 가석방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피해자에게 통보해야 함: 계획된 청소년 가석방 청문회, 도주, 구금 장소의 변경, 혹은 시설로부터 석방.

사회복지 국과 주정부 병원들의 의무사항들

피해자의 서면 요청에 따라, 주정부 병원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피해자에게 통보해야 함: 구금되어 있는 기관과 예정된 구금에서 석방되는 날짜나, 휴가로 방면하거나, 노동 석방되거나, 혹은 지역 교도소로 보내는 내용들과 (미리); 가석방 청문회; 도주, 이전, 혹은 석방; 보안시설이 없는 시설로 이전; 구금중사망등을 피해자에게 통보해야 함.

피해자의 의무사항들

범죄의 피해자들은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들이 있습니다:

- 형사법 담당 기관들에게 피해자나 그들의 대리인들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와 이러한 내용들의 변경사항들을 지속적으로 통보해야 함;
- 만일 피해자들이 판결 이후 절차에 관하여 통보 받기를 원한다면, 관련기관에 서면으로 작성된 요청서를 보내야 함. 그러한 요청서식들에 대한 등록 신청정보는 검찰청, 집행유예국, 교도소, 소년원, 지역 유치장 시설에서 구할 수 있음;
- 법률로 정한 3년 기간의 시효에 해당되는 미해결 사건들의 피해자들에게 매년 그 사건의 상황을 새로이 알려주도록 요청함;
- 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인정 받은 자가 카운티 유치장에서 석방되면 통보 요청을 해야 함;
- 성범죄자 등록종료를 위한 피고인의 청원서가 제출되는 경우 법원 측이 통보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함;
- 교도서 관계자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주소, 전화번호, 직장, 혹은 다른 개인 신상정보들에 관하여 비밀 보장하도록 요청함.

The Process for Ensuring Your Victim Rights

당신의 피해자보호 권리를 확인하는 절차

콜로라도 주법은 범죄 피해자 서비스 자문 위원회와의 접촉을 통하여 개정된 헌법 조항들이 제대로 준수 집행하는지를 확인 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당신의 권리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능하다면, 우선적으로 지역차원의 준수상태를 검토해본다. 이러한 시도에만 국한되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음:

- 당신의 권리들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연락을 취하여 자세히 어떤 것들이 제공되지 않았다고 설명함;
- 당신의 피해자 옹호인, 혹은 상담원과 같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 선거직 공무원, 혹은 당신의 권리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기관의 수장으로 부터 도움을 받음.

연락시도는 구두나 서면으로 합니다. 지역 차원에서의 준수상태를 알기 위한 당신의 노력들의 자세한 기록들은 당신에게도 도움이 되며, 그리고 당신이 피해자권리 보호법에 따라 부응여부에 대하여 범죄 피해자 서비스 자문 위원회에 정식요청을 접수할 시에도 도움이 될 것임.

만일 당신의 문제를 지역차원에서 해결 할 수 없거나 당신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에는, 아래 연락처의 피해자 권리 보호법 전문가와 연락하여 범죄 피해자 서비스 자문 위원회로부터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Colorado Department of Public Safety

콜로라도 주 공공안전 국

Division of Criminal Justice

형사범죄과

700 Kipling Street, Suite 1000

Denver, CO 80215-5865

(303) 239-5719

1-888-282-1080 무료전화 (Denver Metro외부지역)

범죄피해자서비스 자문위원회

범죄피해자서비스 자문위원회는 공공안전 국의 책임자가 지명합니다. 그 위원회는 전 주 지역에 걸쳐, 입법인들, 범죄의 피해자들,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경찰과 검찰청에서 대표한 위원들로 구성합니다.

위원회는 피해자권리보호법의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고발장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그 고발에 대하여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위원회는 피해자권리보호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소위원회는 피해자권리보호법의 불 준수에 대한 모든 공식적인 고발들을 검토하며, 정기적으로 모입니다.

형사과(DCJ)는 범죄피해자서비스자문위원회와 피해자권리보호법 소위원회에 직원들을 제공합니다. 문제해결 노력을 하는 형사범죄과의 직원에 의해 검토된 불 준수 보고서들은 준수절차에 따라 가능한 신속히 제출합니다.

형사과 직원은 피해자권리보호법의 불준수에 대한 당신의 우려사항들에 관하여 당신과 이야기 나누게 됩니다. 그러한 대담 이후, 직원은 고발 당한 기관에 연락을 취합니다. 형사과(DCJ)는 지역차원에서 대부분의 고발들을 비공식적인 중재와 개입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합니다. 그러나 어떤 고발들은 비공식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다음 장에 설명된 공식적인 고발절차로 진행됩니다.

The Formal Complaint Process
공식적인 고발 절차

1. 고발장의 사본은 형사과 (DCJ) 직원이 검토하며, 피해자 권리 보호법(VRA) 소위원회가 피해자 권리 보호법의 범위 내에서 결정합니다.
2. 형사과 (DCJ) 직원과 피해자 권리 보호법(VRA) 소위원회는 그 주장하는 내용들이 피해자 권리 보호법(VRA)을 위반하는 수위까지 올라가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그 고발장을 검토할 것입니다.
3. 만일 고발사항들이 피해자 권리 보호법의 범위 안에 해당되며, 그러한 주장들이 피해자 권리 보호법(VRA)을 위반하는 수위까지 올라가는 경우에는, 고발장의 사본과 첨부된 모든 자료들을 해당기관(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4. 형사과 (DCJ) 직원과 피해자 권리 보호법(VRA) 소위원회는 고소장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피해자 권리 보호법(VRA)을 위반하는 수위까지 올라가는지 와 범위 안의 결정을 하는 데에 도움울줄 관련기관의 정보를 비공식적으로 요청할수도있음. 추가로, 형사과 (DCJ) 직원과 피해자 권리 보호법(VRA) 소위원회는 피해자 권리 보호법(VRA) 준수 목적에 부합되었는지 그리고/혹은 관련기관(들)이 피해자 권리 보호법(VRA)에 나열된 의무들을 지켰는지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비공식적으로 정보요청 할 수 있습니다.
5. 관련기관의 답변을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그 피해자는 추가 혹은 명확한 정보 또한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6. 고발인 과 관련기관으로부터의 양측의 모든 정보들은 피해자 권리 보호법 소위원회가 피해자 권리 보호법을 위반한것에 대한 사실적 근거가 있는지를 결정을 하기위하여 검토될 것입니다.
7. 만일 사실적 근거가 없다면, 그 사건은 종료될 것입니다.
8. 만일 사실적 근거가 있다면, 그 소위원회는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관련 기관에 대하여 요구사항들을 설명할 것임. 이러한 요구사항들은 현재의 문제점들을 개선하며, 그리고 장래 새로운 피해자들을 위하여 시스템 내에서 비슷한 문제점들을 방지하는 것에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9. 피해자에게 소위원회의 회의들의 결과와 관련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의 충족 노력의 진행과정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통보될 것입니다.
10. 어느 측이건 피해자 권리 보호법 소위원회의 판정에 대하여 재검토를 요청할 권리가 있음. 만일 소위원회가 재검토 요청을 허락하지 않을 경우, 재검토를 요청하는 측은 범죄피해자서비스 자문위원회에게 소위원회의 결정을 항소 할 수 있습니다.
11. 어느 측이든 피해자 권리 보호법(VRA)의 거하여 피해자의 권리들이 위반되었다는 것이 사실에 기반 되었는지에 대한 소위원회의 재검토시 발견한 사항들에 대하여 범죄피해자서비스 자문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12. 만일 관련기관이 요구조건들을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건은 주지사 사무실로 통보된다. 주지사는 그 사건을 콜로라도 주 검찰총장에게 통보하여 피해자 권리 보호법 준수이행을 위하여 법정 소송을 시작합니다.

Resources
도움자료들

피해자 보상

범죄의 피해자는 종종 범죄의 결과로서 재정적 도움이 필요함. 피해자는 병원비용, 실직, 정신건강치료, 장례비용, 안경이나 보청기와 같은 의료적으로 필요한 도구들의 소실, 부양 가족들을 부양할 수 없게 되거나, 문짖들, 창문들, 잠금 장치들과 같은 가정 보안 장치들의 손상들과

같은 범죄와 관련된 비용들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다. 각 사법지구별로 피해자 보상기금이 있음. 범죄나 차량위반으로 유죄판결 받은 자들은 이 기금을 지불함. 피해자보상을 어떻게 신청하는 정보에 대하여서는 범죄가 발생한 지역의 사법지역의 검찰청으로 연락함.

주 전역에 걸친 도움자료들

당신의 지역사회에도 당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들이 있음. 경찰서, 셰리프 사무실, 검찰청, 혹은 공공서비스 제공 처들에 위치해있는 피해자 옹호 사무소 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이다.

다른 주 전역에 걸친 자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Asian Pacific Development Center** (아시아. 태평양계열 인구들을 위한 서비스).....**Denver:** (303) 393-0304;
Aurora: (303) 365-2959
-**Colorado Springs:** (719) 459-3947
- **Colorado Anti-Violence Program**..... (303) 839-5204 or 1-888-557-4441
- **Colorado Coalition Against Domestic Violence (C.C.A.D.V.)**..... (303) 831-9632 or 1-888-778-7091
- **Colorado Coalition Against Sexual Assault (C.C.A.S.A.)**..... (303) 839-9999 or 1-877-37CCASA
- **Colorado Organization for Victim Assistance (C.O.V.A.)**..... (303) 861-1160 or 1-800-261-2682
- **Colorado Division of Criminal Justice**... .. (303) 239-5719 or 1-888-282-1080
- **Denver Center for Crime Victims**.....**Crisis:** (303) 894-8000 or (303) 718-8289 (스페인어)
.....**Administration/Translation:** (303) 860-0660
- **Domestic Violence Initiative for Women with Disabilities**..... (303) 839-5510 (also TTY/TDD)
- **Kempe National Center for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and Neglect**..... (303) 864-5300
- **Parents of Murdered Children and Other Survivors of Homicide**.....1-888-818-POMC
- **United Way**.....Call 2-1-1 for resources
.....1-866-760-6489 (Mile High United Way resource line—if 2-1-1 does not work from your phone)